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구단107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주식회사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고	1. ○○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2. ○○시장
	3. ○○시장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피고 ○○군수가 2018. 3.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2,759,560원, 농어촌특별세 13,264,890원 합계 166,024,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장이 2018. 4.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8,298,400원, 농어촌특별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716,540원 합계 9,01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시장이 2018. 4. 10.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169,060원, 농어촌특별세 3,662,940원 합계 45,832,000원의, 원고 B에 대하여 한 취득세 5,653,820원, 농어촌특별세 490,960원 합계 6,144,780원의, 원고 C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66,380원, 농어촌특별세 318,460원 합계 3,984,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6. 5. 23.경 회사 일부가 분할되어 E 주식회사(2009. 4. 24.경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등기함, 이하 '신설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이후 2007. 1. 31.경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등기하였다.

나.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신설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분할 전 회사는 2006. 5. 23.경 원고 B의 배우자 G이 15%, 원고 B의 동생 H가 20%, 대표이사 I가 30%, 이사 J이 15%, 이사 K가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6. 5. 23.경 위 회사가 일부 분할되면서 위 주주들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라. 이후 2011. 3. 14.부터 2015. 12. 31.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신설 회사의 주식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주주	관계	2006.5.23.	2011.3.14.	2014.12.26.	2015.12.31.
원고 회사	사내이사 B	-	30.12%	77.52%	77.52%
원고 B		-	24.46%	7.87%	10.12%
원고 C	원고 회사 사내이사	-	20.96%	6.74%	6.74%
G	B 배우자	15.0%	-	-	-
H	B 동생	20.0%	6.99%	2.25%	-
I	분할 전 회사 대표이사	30%	-	-	-
J	분할 전 회사 이사	15%	-	-	-
K	분할 전 회사 이사	20.0%	6.99%	2.25%	-
L(주)	원고 B 명의신탁	-	-	-	2.25%
M		-	10.48%	3.37%	3.37%

마.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1. 3. 14.부터 2015. 12. 31.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신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4년 및 2015년 위 기간 동안의 신설 회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장부가액에 원고들의 주식증가 비율(14.1%)을 곱한 7,002,116,514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다음, 동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가산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231,001,010원을 물건소재지 비율로 안분하여 주문 1 내지 3항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분 증가분에 대한 과세도 불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가 일부 분할되면서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신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신설 회사의 주식은 분할 전 회사 주식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분할 전 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지방세법 제5조 제7항에 따른 비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이후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분 증가분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원인

① 원고 B는 2006. 5. 23. 신설 회사 설립 당시 주식 100%를 가지고 있었고, G, H, I, J, K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은 원고 B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 기준시점인 2014. 12. 26.과 2015. 12. 31. 원고 B가 위 명의신탁 주주들로부터 환원 받은 지분비율은 그보다 감소한 96.63%(M 지분 3.37% 제외)로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② 원고 B는 신설 회사 설립 시 친족관계에 있는 G, H의 각 지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K, I의 각 지분을 합하면 85%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친족관계에 있는 H의 지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K, 원고 C의 각 지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원고 회사의 지분 등을 합하면 2011. 3. 14.경에는 89.52%, 2104. 12. 26.경에는 96.63%, 2015. 12. 31.경에는 96.63%를 가지는 과점주주이므로, 그 주식 증가분 7.11%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과점주주들은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 ○○군수, ○○시장은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과점주주가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법인설립 시에만 예외적으로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과점주주가 법인설립 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만 제외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바 없이 납세의무를 확대하여 모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기본적으로 과점주주가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법인설립 시에만 예외적으로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예외로 하는 것은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결정 참조),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이후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인 재산에 대한 지분이 증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과세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등 참조).

(2) 원고 B가 신설 회사 설립 당시 신설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내지 21, 23, 26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1996. 9. 5.경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N은 1997. 5. 30.경 O 주식회사, 2001. 6. 22.경 분할 전 회사로 순차 상호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분할 전 회사가 2006. 5. 23.경 일부 분할되어 신설회사가 설립되었고, 분할 전 회사는 2007. 1. 31.경 원고 회사로 상호를 변경등기한 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N의 출자자는 원고 B 한 명인데 가족이나 임직원 명의 등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N이 분할 전 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점, 2006. 5. 23.경 분할 전 회사의 주주는 G, H, I, J, K이고 회사가 일부 분할되면서 지분비율대로 신설 회사의 주주가 되었는데, 2006. 5. 23.경 신설 회사 설립 당시 주주 중 G, H, I, J은 분할 전 회사 및 신설 회사 주식이 모두 원고 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K에 대하여는 신설 회사의 주식이 원고 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임을 인정하는 형사판결이 있는 점, K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B는 신설 회사가 자신이 혼자 출자하여 설립한 1인 회사이고 직원 등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주였던 임원이나 직원들도 일관되게 신설 회사가 원고 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이고 주식을 100%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 보이고 주주인 직원이 퇴사할 경우 원고 B 측에 주식을 반환한 점, 원고 B는 주식명의개서 당시 세무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주식매수대금을 송금하였다가 돌려받기도 한 점(위 과정에서 원고 B가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거래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 B의 명의신탁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주주들이 증권거래세 등을 지급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가 신설 회사 설립 당시 신설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였고, 이를 G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06. 5. 23.경 신설 회사 설립 당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 B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후 원고 B는 원고 회사, 원고 C, L 주식회사 등에게 신설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원고 회사 및 원고 C 등에게 다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환원 받은 2014. 12. 26.과 2015. 12. 31. 원고 B의 주식 소유비율은 96.63%로 감소되어, 위 명의개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B가 최초 과점주주가 될 당시 취득세를 납부한 바 없으므로, 이제 와서 명의신탁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B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설 회사 설립 당시 주식 100%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주식명의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이 부과되자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2011. 3. 14.부터 2015. 12. 31.까지 신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위와 같이 원고 B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3

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